

I. 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(안)

현행	개정안	비고
제7조(성적증명서의 기재) 졸업요건이 충족되고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성적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.	제7조(성적증명서의 기재) 졸업요건이 충족되고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<u>졸업 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로 학적이 변경되는 시점에</u> 성적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. <개정 2025.10.30>	문구 수정
부 칙 1.~ 2. (생략) 3. <u><신설></u>	부 칙 1.~ 2. (생략) <u>3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</u>	부칙 신설

II. 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전문

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

제정 2022년 11월 24일

개정 2025년 10월 30일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학칙 제34조 제4항에 따른 마이크로전공의 범위와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마이크로전공은 학과·학부(전공) 또는 학제 간 개설된 교육과정을 12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이다.

제3조(개설 및 운영) ① 마이크로전공은 캠퍼스 내 각 학과·학부(전공), 학제 간, 또는 부서에서 개설할 수 있다.

② 마이크로전공의 교과목은 12학점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.

③ 마이크로전공은 해당 전공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·학부(전공) 또는 부서에서 설계하여 제안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마이크로전공의 교과목은 대체 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하다. 단, 교과목 폐지 등 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관 학과·학부(전공) 또는 부서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변경안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제4조(신청자격 등) ① 마이크로전공의 신청은 3학기 이상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학생으로 하며, 모집단위가 학부 혹은 자유전공학부인 학생은 1전공을 선택한 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06.17>

② 마이크로전공의 이수 신청은 학기별로 진행한다.

③ 마이크로전공은 최대 2개까지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인공지능융합마이크로전공은 최대 신청 마이크로전공 개수에서 제외한다.

④ 마이크로전공 주관학과 소속(주전공 및 다전공) 학생은 해당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.

⑤ 마이크로전공 주관 학과·학부(전공) 또는 부서가 해당 마이크로전공과 교과과정 이 유사하다고 지정한 학과·학부(전공) 소속(주전공 및 다전공) 학생은 해당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5조(과정이수) ① 마이크로전공 신청자는 해당 마이크로전공에서 요구하는 이수 체계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하기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③ 마이크로전공 과정 이수 중 마이크로전공이 소속된 학과·학부(전공) 다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해당 마이크로전공은 취소된다.

④ 졸업요건이 충족될 경우 마이크로전공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졸업이 가능하다.

⑤ 승인된 마이크로전공의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하다.

제7조(성적증명서의 기재) 졸업요건이 충족되고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 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로 학적이 변경되는 시점에 성적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 한다. <개정 2025.10.30>

제8조(보칙) 마이크로전공 운영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(2022. 11. 24. 공포)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3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